



대통령령 제16,801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0년 5월 1일

국무총리 박태준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

대통령령 제16,802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
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0년 5월 1일

국무총리 박태준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600원” “리터당 63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137원”을 “리터당 155원”으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공장
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휘발
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600원에서 630원으로 30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
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39원)을 인
상하고, 경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137원에서 155원으로 18원(교통세에 부가
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3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
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
를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공
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등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
되던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
행 43원에서 60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2원)을 인상
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
(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
를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① 법 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별표1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에 관한 기준등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5호 내지 제10호의 시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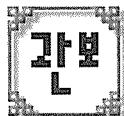
관한 규정과 별표2의 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어해설

• 도배족

도배족이란 PC통신의 게시판 등에 특별한 내용도 없는 글이나 문자를 말 그대로 도배하듯 연속적으로 올려 스트레스를 푸는 ‘사이버 빙향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도배족들은 각종 설문에서 ‘가장 짜증나는 네티즌’ 3~5위에 들 정도로 네티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이런 사이버 반형아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PC통신 천리안이 최근 10대를 위한 공간인 ‘클럽텐(go CLUB10)’ 메뉴를 개편하면서 ‘도배 게시판’을 만든 것이다. 1백번째, 2백번째 등 백번대로 도배글을 올리는 네티즌에게는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까지 주고 있다. 천리안의 박선미씨는 “게시판을 도배해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의 글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말하는 도배족이 많았다”며 “이들을 견전한 문화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배 게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배 게시판은 개설 1주일도 안돼 게시건 수가 9천건을 넘어서는 등 n세대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m ³ 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m ³ 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m ³ 이상
	다. 회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m ³ 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함유물질 유류저장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m ³ 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m ³ 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m ³ 이상 혹은 동력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모든 시설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m ³ 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m ³ 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10. 자동차정비시설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m ³ 이상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m ³ 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유판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 자동차제조업	가. 도장시설	(1) 연속도장공정, 즉 메인부스(main booth)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시설의 경우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나) 신규시설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량이 전차 도장면적당 메탈릭도료(metallic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120g/m ² , 고체도료(solid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60g/m ²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건조시설과 혼합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4.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5. 폐기물보관처리 시설(폐기 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가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설치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고온열분해 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건류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용융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증발·농축 반응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정비시설	카. 건조시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도장시설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비고 :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영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